

조각투자와 뮤직카우 '제재 보류' 결정이 남긴 것들



정 변호사의 현장일지 (18)



정 재 우

경력 사 이 표

『학력사항』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최우등)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노동법)

『경력사항』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 한국청년변호사회 상임대표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법 커뮤니티위원장
- (사)블록체인법학회 발기인, 학술이사
- 주간조선, 이데일리, 매일경제, 뉴스토마토 외부필진으로 활동 중



〈서울 마포구 뮤직카우 본사 모습. 지난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서 판매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상품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통상 뮤직카우를 저작권 투자 플랫폼이라 알고 있지만,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다. 이용약관에도 이러한 사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뮤직카우는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을 통해 히트곡 등에 대한 음악저작권을 매입하여 보유토록 하고 저작권협회에 신탁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뮤직카우에셋에 대해 저작권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뮤직카우는 이러한 수익권을 쪼개 거래되도록 했다. 쉽게 말하면, 뮤직카우에서 사고 거래하는 것은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권이다. 뮤직카우는 이러한 청구권의 명칭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 명명했다.

1.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증권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업 구조를 짰을까? 그 이유는 저작권을 직접 거래하도록 하면 그 절차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양도하려면 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저작권을 여러 사람이 분산하여 소유하는 경우 분산 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서로 잘 아는 2~3명이 저작권을 같이 보유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수백, 수천 명이 저작권을 쪼개서 보유한다면 그 양도 과정이나 권리 행사 관련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뮤직카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저작권이 아닌 수익권을 분할해 거래를 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022년 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022년 3월) 검토를 바탕으로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①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②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제4조 제6항).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보유자가 ‘뮤직카우 및 그 자회사’가 운영하는 저작권 관련 사업에 따라 그 수익을 받게 되므로,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증권이면 무엇이 문제되나?

증권을 거래할 때에는 자본시장법상의 여러 규제들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컨대 증권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의 취급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또는 등록(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을 받아야 하며, 투자권유규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여러 영업행위 규제도 적용된다.

뮤직카우와 관련하여서도 증선위는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상의 규정 등을 문제 삼았는데, 구체적으로는 뮤직카우가 증권에 해당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거래하면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투자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①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②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증선위 승인 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은 금지되나,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뮤직카우를 통해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며, 금번 결정에 따라 뮤직카우의 사업재편이 완료되면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청구권의 안전성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제재절차 '개시'를 조건부 보류하는 것으로 제재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뮤직카우 측이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절차 진행을 위해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반적인 제재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증선위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증선위에서 문제 삼은 증권신고서 관련 규정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증권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매출, 모집)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뮤직카우에 대해 규제 철폐를 내린다면, 애초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법 규정의 취지는 무색하게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야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재를 보류한 것은 잘한 일이다. 기계적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회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때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또한 저작권을 쪼개서 거래하는 것의 불편함으로 인해 뮤직카우가 부득이 저작권이 아닌 그 수익권을 쪼개 거래를 하도록 한 점, 이를 통해 새로운 음악

저작권 시장을 연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증선위 결정은 규제의 적용과 집행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 관련 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보류했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허탈한 결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만약 뮤직카우보다 먼저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문제되지 않은 업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곧바로 제재를 한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신생업체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사업을 시작하기조차 힘들다면 이것은 공정한가? 결국 이번 증선위 결정은 수많은 예비 사업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준수’하는 것보다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안 걸리면 된다, 부딪쳐보는 것이 낫다는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퍼지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무력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일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다. 다만 적어도 제재 보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단순히 먼저 사업을 했다고, 사용자를 많이 모았다고 제재를 보류해주시겠다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정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없다고 회신을 했거나, 일정기간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재를 보류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긴 하다. ‘규제신속확인제도’는 사업 시작 전 인·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다.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하면 정부는 관계부처 등에 신청서를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준다. 만약 답변이 없다면 규제 없음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규제신속확인제도와 규제 보류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뮤직카우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 보류 결정이 잘한 결정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나쁜 결정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주간조선)